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2021.2.19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통관 정보업무 운영에 따른 심사 방법범위 등 규정 및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통관보류 제도 보완, 보세구역반입의 무자, 수입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등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주요 개정사항

1. P/L 신고건에 대한 심사방법 및 업무범위 규정 신설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7조, 제 22조, 제25조, 제34조)

| 현행 | 개정안 |
|------------------|---|
| 수입과에서 P/L 신고건 처리 | P/L 신고건에 대하여 <u>통관정보 운영부서에서 통합하여 위험분석 및 신고사항 심사</u> |

2. 수입신고 취하 승인기간 신설 (제18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 개정안 |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 승인 하에 신고 취하 | <u>신고 취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u> 하고 세관장이 <u>10일 내 승인하지 않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u> |

3.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 (제26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 개정안 |
|--------------------------|--|
| 관세법 위반 등의 사유 해당할 경우 통관보류 | 통관보류 사유에 <u>조약, 국제법규 위반 및 지방세법 따른 체납을 추가</u> 하고, 통관보류 시 <u>화주 통보 및 통관보류 해제요청 등 절차 추가</u> |

4.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규정 신설 (제 107조, 제110조, 제111조, 제 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 개정안 |
|---|--|
| 관세법령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명령 | 반입의무자를 <u>화주 또는 신고인</u> 으로 명확히 하고, <u>경미한 사항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 가능</u> |

II.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042-481-7851), 문현준 관세행정관(7733)
백광환 관세행정관(042-481-7856), 옥호광 관세행정관(7847)
- 제출기한 : 2021. 3. 10.
- 제출방법 : 이메일(mkun75@korea.kr), 팩스(042-481-7819)

III. 첨부파일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 1]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첨부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규대조표
- [첨부 3]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별지, 별표 제외)
- [첨부 4]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별표)

| Contact



김승욱 관세전문가
T 02-6011-1535
E sokim@esein.co.kr



안성호 관세전문가
T 070-4353-1529
E shah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